

### 3 지방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

□ 근거 : 지방재정법 제32조의8

□ 지방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원칙

- ▶ 사업부서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 심사 후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기한을 정하여 함께 반납 받아야 함.
  - 반납시점 :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후 사업부서에서 검토하여 잔액 및 이자액을 확정 후 고지한 즉시 반납
    - ※ 보조사업자가 자치구인 경우, 예산에 미계상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최소한 사업집행 완료 익년도 내에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
- ▶ 사업부서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에 대해 반환조치

□ 지방보조금 발생이자 기준

- ▶ 반환받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지방보조금관리기준(행안부예규 제11호)을 따름.
  - 반환이자 적용대상 : 최초 교부받은 때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환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이자
    - ※ 집행잔액에 대한 이지만 납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, 교부받은 보조금 전액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'0'인 경우에도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로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납할 때까지 실제 발생한 이자는 반납하여야 함
  - 반환금리 : 지방보조금의 지정계좌의 약정 금리 적용
  - 반환기한을 경과한 기간의 이자 :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기간을 경과한 날로부터 실제 반환일까지의 이자는 별도 협약이 없는 경우 「민법」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%를 적용함.

「민법」 제379조(법정이율) 이자가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%로 한다.

- ▶ 사업부서의 장은 장기미납 보조금에 대해 환수계획을 마련하여 조속히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.

- ▶ 보조사업자가 자치구청장인 경우, 이자산정방식은 '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, 기획재정부' 준용

- 반납이자 산정을 위한 금리 :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 적용

**이자산정 사례1 (2018.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준용)**

〈사례1〉 자치단체가 보조사업을 직접 집행한 경우 반납이자

- '17년 1월 5일 지방하천 정비사업(보조사업)으로 A부처에서 B시(보조사업자)로 25억원으로 교부결정하고, 1월 10일 보조금을 교부
- B시는 2월 15일 C사업자(계약자)에게 15억원을 집행하고, 7월 10일 D사업자(계약자)에게 9억원을 집행(집행잔액 1억원 발생)
- B시가 12월 20일 보조사업을 완료하고 정산하는 경우 B시에서 A부처로 반납할 이자는 얼마인지?  
(B시가 금융기관과 보통예금 금리를 연 2%로 약정한 경우를 가정)  
⇒ 집행잔액(1억원)외 보조금 발생이자로 13,775,330원 정산·반납

- ▶ (이자1)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1차 집행일(C사업자)까지 이자(1.10~2.14) : 4,931,500원
  - $2,500,000\text{천원(보조금)} \times 2\%(\text{금리}) \times 36/365 = 4,931,500\text{원(일원단위 절사)}$
- ▶ (이자2) 1차 집행일(C사업자)부터 2차 집행일(D사업자)까지 이자(2.15~7.9) : 7,945,200원
  - $1,000,000\text{천원(보조금-1차집행액)} \times 2\%(\text{금리}) \times 145/365 = 7,945,200\text{원(일원단위 절사)}$
- ▶ (이자3) 2차 집행일(D사업자)부터 정산일까지 이자(7.10~12.20) : 898,630원
  - $100,000\text{천원(집행잔액)} \times 2\%(\text{금리}) \times 164/365 = 898,630\text{원(일원단위 절사)}$

〈사례2〉 자치단체가 간접보조금으로 집행한 경우 반납이자

- '18년 1월 5일 지방하천 정비사업(보조사업)으로 A부처에서 B시(보조사업자)로 25억원으로 교부결정하고, 1월 10일 보조금을 교부
- B시는 2월 15일 간접보조사업자(시·군 또는 민간)에게 간접보조금 15억원을 1차 교부, 7월 10일 10억원을 2차 교부
- 간접보조사업자가 10월 10일 간접보조사업을 종료·정산하여 11월 10일 집행잔액 1억원을 B시로 반납
- B시가 12월 20일 보조사업을 완료하고 정산하는 경우 B시에서 A부처로 반납할 이자는 얼마인지?  
(B시가 금융기관과 보통예금 금리를 연 2%로 약정한 경우를 가정)  
↳ 집행잔액(1억원)의 보조금 발생이자로 13,101,350원 정산·반납

- ▶ (이자1) 보조금 교부받은 날부터 간접보조금 1차 교부일까지 이자(1.10~2.14) : 4,931,500원
    - $2,500,000\text{천원(보조금)} \times 2\%(\text{금리}) \times 36/365 = 4,931,500\text{원(일원단위 절사)}$
  - ▶ (이자2) 간접보조금 1차 교부일부터 2차 교부일까지 이자(2.15~7.9) : 7,945,200원
    - $1,000,000\text{천원(보조금 - 1차교부액)} \times 2\%(\text{금리}) \times 145/365 = 7,945,200\text{원(일원단위 절사)}$
  - ▶ (이자3) 간접보조금 반납일부터 정산일까지 이자(11.10~12.20) : 224,650원
    - $100,000\text{천원(간접보조금 반납액)} \times 2\%(\text{금리}) \times 41/365 = 224,650\text{원(일원단위 절사)}$
- \* 간접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는 보조사업자(B시)의 세입으로 처리한 후, 보조사업자(B)는 간접보조금의 집행잔액과 이자를 다시 중앙관서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.
- ☞ 간접보조금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는 보조사업자가 임의로 처분해서는 안되고, 중앙관서의 장에게 다시 반납해야 함